8. 토지수용법시행규칙중개정령

건설교통부령 제170호 1999. 2. 19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시 ·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수용법이 개정(1999. 2. 8, 법률 제5909호)됨에 따라 토지출입증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토지수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중 "토지수용법 제8조제1항"을 "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"으로 하고, 동 서식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기간 : 년 월 일부터
년 월 일까지

별지 제2호서식중 "서울특별시장"를
도 지 사
"시 장"으로 한다.
군 수
구청장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주택회보